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「철도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업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함(안 제15조의2 신설)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)